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525호

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(주)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(최초)

「철도안전법」 제7조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(주)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

- 회사명 :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(주)
- 대표자 : 이 용 주
- 소재지 :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약촌역길 139 김포한강차량기지

2.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

- 철도운영(도시철도)
 - 철도안전관리시스템(SMS)
 - 열차운행체계
 - 유지관리체계